

중화인민공화국 수입식품해외생산업체 등록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에 대한 등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및 그 실시조례·<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험법> 및 그 실시조례·<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동식물검역법> 및 그 실시조례·<식품 등 제품에 대한 안전감독관리를 강화할 데 관한 국무원 특별규정> 등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해외 생산·가공·저장 업체(이하 수출식품 해외생산업체라 함)에 대한 등록 관리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전항에 규정된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에는 식품첨가제, 식품 관련 제품 생산·가공·저장 업체가 포함되지 않는다.

제3조

해관총서는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에 대한 등록관리 업무를 일괄적으로 담당한다.

제4조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는 반드시 해관총서의 등록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장 등록 조건과 절차

제5조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조건:

- (1) 소재 국가(지역)의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이 해관총서의 동등성 평가·심사 통과
- (2)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의 승인을 거쳐 설립되었고 주관 당국의 효과적인 감독·관리를 받음
- (3) 효과적인 식품안전 위생관리와 예방 시스템이 구축되었고, 소재 국가(지역)에서 합법적으로 생산 및 수출되었으며, 중국으로 수출하는 식품이 중국의 관련 법률법규와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부합함을 보장함

(4) 해관총서와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이 합의한 관련 검사검역 요구사항에 부합함

제6조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방식에는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이 등록을 추천하는 방식과 업체가 등록을 신청하는 방식이 포함된다.

해관총서는 식품 원료공급원 · 생산 가공공정 · 식품안전역사데이터 · 소비군 · 식용방식 등 요소에 대한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또한 국제관례와 결합하여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방식과 신청서류를 확정한다.

리스크 분석을 거쳐 또는 어떤 종류의 식품 리스크에 변화가 발생함을 나타내는 증거가 있을 경우, 해관총서는 관련 식품 해외생산업체의 등록방식과 신청서류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다음 식품 해외생산업체는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이 해관총서에 등록을 추천한다.

육류와 육제품, 케이싱, 수산물, 유제품, 제비집과 제비집 제품, 벌꿀제품, 계란과 계란제품, 식용유지와 식용유 원료, 소를 넣은 면류, 식용곡물, 곡물제분 공업제품과 맥아, 신선 · 탈수 채소 및 건두(乾豆), 조미료, 견과와 씨앗류, 견과(乾果), 로스팅을 하지 않은 커피콩과 코코아, 특수식이용 식품(特殊膳食食品), 건강식품.

제8조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은 반드시 등록을 추천하는 업체에 대한 심사검사를 실시하여 등록요구에 부합함을 확인한 후 해관총서에 등록을 추천하며 다음과 같은 신청서류를 제출한다.

- (1)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의 추천서한
- (2) 업체명단과 업체 등록 신청서
- (3) 업체신분증명서류, 예를 들면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이 발급한 영업허가증(營業執照) 등
- (4) 추천업체가 본 규정 요구에 부합함을 약속하는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의 성명서

(5)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이 관련 업체에 대해 심사검사를 실시한 심사 보고서

필요 시, 해관총서는 업체의 식품안전 위생과 예방시스템 문서, 예를 들면 업체 생산구역·작업장·냉동창고의 평면도 및 공정흐름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본 규정 제7조에 열거된 식품 이외의 기타 식품을 생산하는 해외생산업체는 반드시 자체적으로 또는 대리인에게 위탁하여 해관총서에 등록을 신청하고 다음과 같은 신청서류를 제출한다.

- (1) 업체 등록 신청서
- (2) 업체신분증명서, 예를 들면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이 발급한 영업허가증 등
- (3) 본 규정 요구사항에 부합함을 서약하는 업체의 성명서

제10조

업체의 등록 신청서 내용에는 기업명칭, 소재국가(지역)명, 생산장소 주소, 법정 대표자, 담당자, 연락처,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이 승인한 등록번호, 등록신청 식품종류, 생산유형, 생산능력 등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

등록 신청 서류는 중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하며, 관련 국가(지역)와 중국이 등록방식과 신청서류에 대한 별로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양측 합의에 따라 이행한다.

제12조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 또는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는 제출한 서류의 진실성, 완전성, 적법성에 대해 책임진다.

제13조

해관총서는 자체적으로 또는 관계 기관에 의뢰하여 심사팀을 구성하며, 서면 검사·영상검사·현장검사 등 방식과 이러한 방식의 조합을 통하여 등록신청을 한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에 대한 평가와 심사를 실시한다. 심사팀은 2

명 이상의 평가심사위원으로 구성된다.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와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은 상기 평가심사 업무를 협조해야 한다.

제14조

해관총서는 평가심사 상황에 근거하여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에 대한 등록을 실시하고 중국에서의 등록번호를 부여하며,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 또는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요구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는 등록을 해주지 않고,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 또는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15조

등록된 기업가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할 경우, 반드시 식품 내포장·외포장에 중국에서 부여받은 등록번호나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이 승인한 등록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제16조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의 등록 유효기간은 5년이다.

해관총서는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시, 등록 유효기간 시작일과 만료일을 확정해야 한다.

제17조

해관총서는 등록된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명단을 일괄적으로 공표한다.

제3장 등록 관리

제18조

해관총서는 자체적으로 또는 관련 기관에 의뢰하여 심사팀을 구성하여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가 지속적으로 등록요구사항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재검사를 실시한다. 심사팀은 2명 이상의 평가심사위원으로 구성된다.

제19조

등록 유효기간 내에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의 등록정보에 변화가 발생할 경

우, 등록신청 경로를 통해 해관총서에 변경 신청하고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한다.

- (1) 등록사항 변경 정보 대조표
- (2) 변경된 정보와 관련한 증빙서류

해관총서는 평가를 거쳐 변경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정보변경을 함.

생산 장소 이전, 법정대표자 변경 또는 소재 국가(지역)이 부여한 등록번호가 변경될 경우에는 다시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중국에서의 등록번호는 자동으로 효력을 잃게 됨.

제20조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가 등록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등록 유효기간 만료일 3~6개월 전에 등록신청 경로를 통해 해관총서에 등록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등록 연장 신청 서류는 다음 서류를 포함한다.

- (1) 등록연장 신청서
- (2) 지속적으로 등록 요구사항에 부합함을 서약하는 성명서

해관총서는 등록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연장을 승인하고, 등록 유효기간은 5년 연장한다.

제21조

등록된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해관총서는 동 업체의 등록을 말소하며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 또는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에 통보하고 이를 공표한다.

- (1) 규정에 따라 등록 연장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2)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 또는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가 자진하여 말소 신청한 경우
- (3) 본 규정 제5조 제(2)항 요구사항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않는 경우

제22조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은 등록업체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관리를 실시해야 하고, 등록업체가 지속적으로 등록 요구사항에 부합하도록 독려하며, 등록 부적합 사항 발견시 즉각 통제조치를 취하고 관련업체의 대중국 식품 수출을 잠정 중단하며, 중단은 시정을 거쳐 등록 요구사

항에 부합할 때까지 지속된다.

수입식품 해외등록업체가 자체적으로 등록 부적합 사항을 발견할 경우, 자진하여 중국수출을 잠정 중단하고 즉각 시정조치를 취해야 하며 중단은 시정을 거쳐 등록 요구사항에 부합할 때까지 지속된다.

제23조

해관총서가 등록된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가 더 이상 등록 요구사항에 적합하지 않음을 발견할 경우, 규정된 기한 내에 시정할 것을 명하고, 시정기간에는 관련 업체의 식품 수입을 잠정 중단한다.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이 등록을 추천한 업체가 수입 잠정 중단 결정을 받을 경우, 주관 당국은 관련 업체가 규정 기한 내에 시정을 마치도록 감독해야 하며, 해관총서에 서면 시정보고서와 등록 요구사항 적합 서면 성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체적으로 또는 대리인에 위탁하여 등록을 신청한 업체가 수입 잠정 중단 결정을 받을 경우, 규정 기한 내에 시정을 마쳐야 하며, 해관총서에 서면 시정보고서와 등록 요구사항 적합 서면 성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관총서는 업체의 시정상황을 심사하며, 심사 합격할 경우 관련 업체의 식품 수입을 회복한다.

제24조

등록된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해관총서는 동 업체의 등록을 철회하고 이를 공표한다.

- (1) 업체 자체 원인으로 수입식품에 중대한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 (2) 수입 검사검역 중 중국으로 수출된 식품에서 식품안전문제가 발견되었고 상황이 심각할 경우
- (3) 업체의 식품안전 위생관리에 중대한 문제가 존재하여 중국으로 수출하는 식품이 안전위생 요구사항에 부합함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
- (4) 시정조치를 이행했으나 여전히 등록 요구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5) 허위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상황을 은폐한 경우
- (6) 해관총서의 재조사와 사고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7) 등록번호를 임대, 대여, 양도, 전매, 도용하는 경우

제4장 부칙

제25조

국제기구 또는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국가(지역)의 주관 당국이 전염병 상황을 발표하거나 수입 검사검역 중 관련 식품에서 전염병·공중보건사태 등 중대한 문제를 발견할 경우, 해관총서는 공고를 발표하여 해당 국가(지역)의 식품 수입을 잠정 중단해야 하고 이 기간에는 해당 국가(지역) 관련 식품 생산업체의 등록 신청을 받지 않는다.

제26조

본 규정에서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이라 함은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가 있는 국가(지역)의 식품생산업체 안전위생 감독관리를 담당하는 정부부처를 말한다.

제27조

본 규정은 해관총서에서 해석을 담당한다.

제28조

본 규정은 2022.1.1.부터 시행한다. 2012.3.22. 원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령 제145호와 2018.11.23. 해관총서령 제243호에 따라 개정된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관리규정>은 동시에 폐지된다.